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540

발의일자 : 2024. 5. 28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신고체계의 마련, 협력체계의 구축,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~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 등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어린이안전관리"란 어린이의 생명·신체·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 을 말한다.
- 2. "어린이 안전사고"란 화재·교통·추락·약취·유인·성범죄·유 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 한다.
- 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-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
- 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, 단위 사업별 계획
- 3.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4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- 5.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 · 홍보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어린이안전교육)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,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 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· 보급
 - 2.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
 - 3.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
 - 4.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

제8조(신고체계 마련)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

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(신고의 접수·처리·관계 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다)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, 교육지원청, 전문기관,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홍보)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제9조의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29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어린이"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- 2. "보호자" 란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어린이이용시설"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- 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- 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
- 마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바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·장소 중 대규모점포, 유원시설, 전문체육시설, 공연장, 박물관 및 미술 관
- 사.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4. "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" 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야 한다.
-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- 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점검·제출·보고, 시행 결과의 제출·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) ① <u>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</u> 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 친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신고 및 협조 의무 등)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·식품, 시설·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,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어린이안전교육)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교육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, 시간,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